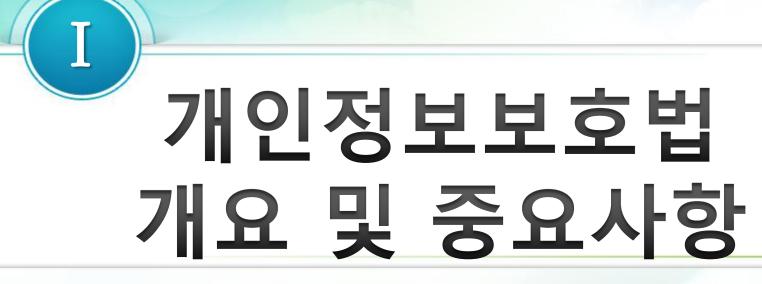




2012년 정보보안 교육 목차

- 1.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중요사항
- II.개인정보보호 실무사례 (Q&A)
- Ⅲ.좀비 PC 및 악성코드 예방법
- Ⅳ.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필수 실천 사항 정리
- V. 끝맺음







0

1. 법 제정 취지 및 배경

법 제정 취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필수 유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 기준 준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2. 법률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대상: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72개 업종 350만 전체 사업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 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학교 등 2.8만 전체 공공기관
- 사업자 협회 ·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적용범위: 전자파일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이벤트 응모권 등 수기문서 포함

※ 법 적용 일부 제외(법58조)

•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법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법 제3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법 제31조) 적용 제외



3. 중요 사항 (1)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처리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

정보주체

"정보주체"란 수집·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3. 중요 사항 (2)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개인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 단체
-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법 제23조, 제24조) 정보주체에게 <mark>별도 동의</mark>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3. 중요 사항 (4) (참고사항)

개인정보의 종류

Q]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형구분	개인정보 항목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이바져버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일반정보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707111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
교육 및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	고용정보	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
훈련정보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결과, 직무태도
	가족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가족정보	전화번호		가족병력기록,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의료정보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부동산	C.C. & 716, 7141778, 7471, C.7741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0.1	실제 납기에 납기거려 납니지 미 시시크 기디지트이	통신정보	file), 쿠키(Cookies)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기타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습관 및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수익정보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취미정보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3. 중요 사항 (5)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사항>

- 1) 개인정보 처리목적
-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 7)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학원정보공개

 재정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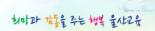
 기업사랑・학교사랑
 +

처벌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Home | 행정정보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알림판

관련사이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총을 원활히 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 전이 변경될 지에는 지적동의를 구확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총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명칭	처리목적
1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관리
2	공익법인임원	공익법인 임원 관리
3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4	초등교원임용시험	임용시험 응시자 관리
5	중입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관리
6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회원정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운영관리(학생, 학부모, 홈에듀민원, 온라인채용, 검정고시)
7	중등교원임용시험	임용시험 응시자 관리
8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관리
9	고입검정고시	중학교 졸업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관리
10	방과후학교지원센터홈페이지회원정보	방과후학교지원센터홈페이지 회원 관리



3. 중요사항 (6)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불필요

개인정보 위탁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문서에 의하여야 함 (법 제26조, 영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토록 공개 (법 제26조제2항)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실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영 제28조제2항)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 1)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함(법 제26조 제4항)
-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법 제26조 제6항)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처벌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역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

수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2012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평가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OMR카드 리딩 및 채점	2012.08 ~ 2012.09	(주)서정티앤에스
2012년 고객(민원)만족도 조사에 따른 조사대상자 (고객) 명부	2012.09	(주)동남리서치



개인정보보호 실무사례





\Rightarrow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법제15조1항)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법률 등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5.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사전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정보주체의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허용 불가)

벌칙규정

수집이용 기준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법제15조1항)

Q] 입학생 또는 재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와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A] 학생정보가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는 경우, 학교에서 <u>교육적 목적</u>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 처리 · 이용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이 경우 타법에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참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기준(법제15조1항)

Q] 학교에서 학기초에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학부모의 인적사항 중 월수입, 재산(부동산등), 직업 등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A)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항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세부기록부의 가족상황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으로 학생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력을 할 수 있으나, <u>학생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범위에 학부모의 생활수준, 월수입, 재산, 직업, 종교, 학력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u>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은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참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기준(법제15조1항)

Q] 저소득층 학교 교육비 지원 사업(학비, 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를 수집해야 하는데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 이 경우 저소득층 학교 교육비 지원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함.

(근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집허용)



-

[참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기준(법제15조1항)

Q] 본인의 희망으로 청소년단체(스카우트연맹 등)에 가입을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것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리고 가입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 이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수집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함. 수집과 제공은 서로 다른 별도의 문제임.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받아야함.



[참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기준(법제15조1항)

Q] 학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사진, 학교행사사진, 수업동영상, 대회입상자 공개 등을 게시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또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는가? 단체사진일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해당 사진은 게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A]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음. 또한 단체 사진의 경우 동의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후 게시가 가능함.



[참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기준(법제15조1항)

Q]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수학여행, 졸업앨범 제작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일이 매년 반복되지만 건별로 동의서를 받다보니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년초에 일괄로 동의서를 받는 방법은 없는가?

A) 이 경우 수집의 경우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이유는 「교육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는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됨. 타법에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음. 그러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의 제3자 제공은 반드시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와 제3자 제공은 서로 다른 사안임. 일괄동의의 경우, 각각의 사안에 대해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라면 일괄 동의가가능함.



1. 개인정보 수집 일괄 동의 예시

[참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기준[법제15조1항]

	□ 일팔 등의 예시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단	수집이용목적 단체 여행 중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여행자 보험 가입 신청 할인제도 이용 신청 수집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이용 및 보유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험 가입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제공받는 자 : ○○여행사 2. 연락처 : 3.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보험 가입 처리 4. 제공하는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6.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험 가 업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금 기 입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본인 및 할인제도 이용 대상여부 확 인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 동의(특수 학교의 경우)	분인 및 할인제도 이용 대상여부 확 인을 위한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특수학교의 경우)			
졸 업 앨 범 제 작	1. 수집이용목적 : 졸업생 앨범 제작 2. 수집항목 : 학생사진, 성명, 학년, 반 3. 이용 및 보유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졸업 앨 범 내용에 본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업체 2. 연락처 : 3.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앨범 제작 4. 제공하는 항목 : 학생사진, 성명, 학년, 반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제작 후 납품 시까지 6.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졸업 앨 범 내용에 본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흥 보 물 제	1. 수집이용목적 : 교내외 교육활동 홍보 및 대외 수 상자 홍보 자료 작성 2. 수집항목 : 학년, 반, 성명, 사진, 동영상, 작품활동 내용, 수상내역 3. 이용 및 보유기간 : 4. 등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홍보물 내용에 본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업체 2. 연락처 : 3.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학교 홍보물 제작 4. 제공하는 항목 : 학생사진, 성명, 학년, 반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제작 완료시까지 6.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홍보물 내용에 본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성 명 :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성명 : (인) 연 락 처 :					
	는 관 계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등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이용 관련 Q&A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법제15조1항)

Q] 담임선생님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교내부 및 교육청 단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따로 동의를 받거나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는가?

A) 담임선생님이 학교 내부 또는 교육청의 업무를 법령 등에 근거하여 처리할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학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제공·공유 절차 관련 Q&A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미리 고지

〈고지항목(제17조제2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획득 필요
 - 특히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체결 금지





개인정보의 제공과 공유

0]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이라함은 어디까지 범위인가?

A]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 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 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개인정보의 제공과 공유

Q]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A] 아래와 같음.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과 공유

Q] 학교에서 수학여행 학생명단을 보험가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게 되는데, 당초 수학여행신청서 받을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가?

A) 여행자 보험의 가입 강제는 조달청의 공고인 '수학여행·수련 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나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조달청의 '공고'는 법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단체보험의 가입을 위하여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개인별로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제공과 공유

Q] 학교에서 졸업여행 등으로 인하여 여행업체에 학과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팀에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공유 절차·방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방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A) 개인정보처리자는 학교이며, 학교 내의 기관 또는 부서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학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학교 내의 기관 및 부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절차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가능함. 즉, 이 경우 제공, 공유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공과 공유

Q] 학교에서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는데 비행기 티켓팅을 위해 성명 및 영문이름, 전화번호를 보내는데 이것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지 해외어학연수의 지원 신청을 받아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 학생의 개인정보는 신청을 받을 때 수집 · 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 이용 가능하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교내의 해외연수 업무는 법령상의 의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제공과 공유

Q] 학생증 발급을 위해 거래은행에 자료를 일괄로 보내 학생들이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규정한 소관업무가 맞는가?

A) 학생증발급은 학교의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을 갖는 학생증의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된다면 다른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제공과 공유

Q] 학교홈페이지에 학교 동창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을 경우 회원정보 게재(사진, 연락처)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가? 학교 동창회에서 홈페이지가 없고 단지 동창회 회원 명부 (연락처) 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A] 홈페이지에 동창회 회원 정보를 게시하거나 동창회 명부의 작성을 할 때 연락처 또는 사진 등과 같은 정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함.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제공과 공유

Q] 학생이 자신의 동의없이 성적표를 부무에게 전송하였다고 항의를 하였다.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가?

A]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생활세부기록부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성적정보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표를 발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 Q&A

[참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기준[법제18조제2항]

- 1.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 불능상태, 주소불명 등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 5. 다른 법률상의 소관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 6.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 국제기구 제공에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 제5호 ~ 제9호는 공공기관만 해당

처벌규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 Q&A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 또는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미리 고지

〈고지항목(제18조제3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홈페이지 등에 게재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방법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마련 요청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Q&A

→ [참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기준(법제18조제2항)

Q] 입시자료를 신청했던 학생 리스트를 활용하여 대학을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A) 입시자료를 신청한 학생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입시자료의 수신을 목적에 해당, 대학의 홍보 이메일을 송부하기 위해 입시자료 신청 학생 명단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으로 정보주체인 입시자료 신청 학생의 별도 동의가 필요함.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Q&A

→ [참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기준(법제18조제2항)

Q] 다른 부서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는가?

A) 학생과 관련하여 정보처리자는 학교이며, 학교 내 기관 또는 부서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학교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함.



6. 개인정보 파기 관련 Q&A

주요내용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사례〉

- 1.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보존의무
-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의무



6. 개인정보 파기 관련 Q&A



개인정보 파기

Q] 학교와 기관 간의 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용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 이런 정보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A]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 그러므로,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또한 그 수집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



6. 개인정보 파기 관련 Q&A



개인정보 파기

Q]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만약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함.



6. 개인정보 파기 관련 Q&A



개인정보 파기

Q] 해마다 담임교사가 가정환경조사를 통해 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교무실과 행정실에 1부씩 비치하고 있다. 이것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가? 몇 년 전 명부도 교무실에 보관되어 있던데 이것은 폐기해야 하는가? 만약 파기해야 한다면 파기 기록도 따로 남겨야 하는가?

A]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계없이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수기문서 또는 출력물 등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함.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6. 개인정보 파기 관련 Q&A



개인정보 파기

Q] 수집된 개인정보의 언제, 어떤 방법으로 파기 해야 하는가?

A)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 파기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함.



7.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관련 Q&A

주요내용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u>인정보 구분</u>

처벌규정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법 제22조제5항)

처벌규정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내용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예외적으로만 처리 가능

〈민감정보의 정의〉(법 제23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예외적 허용〉

- 1.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처벌규정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민감정보

Q] 법에서 정한 민감정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유전 정보, 범죄경력]





민감정보

Q] 방과후 강사 채용을 위해 강사님들 위촉계약이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들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A] 성범죄 경력의 경우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므로 민감정보에 포함됨.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민감정보

Q] 사상·신념, 건강상태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A]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 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함.



민감정보

Q] 민감정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며, 꼭 암호화 해야 하는가?

A]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암호화를 포함한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9.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Q&A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예외적 허용〉

- 1.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처벌규정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Q&A

주요내용

- 암호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제24조제3항)
- 고유식별정보의 분실·도난 ·유출·변조·훼손 등 방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대통령령)〉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소속 직원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3.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 입출력 자료, 이동식 저장매체 등 기록물의 관리 및 보호조치
- 4.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제한 및 관리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조치
- 7.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방지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8.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 9.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10.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의 보완 취약점 수정·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법 제24조)

Q] 민원 업무(행정정보열람, 제증명 발급 등) 처리 시 민원인(본인 또는 제3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느가?

A]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또한, 학교 등 공공기관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신고자를 확인하는 경우 동의 없이도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도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법 제24조)

0] 고유식별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원척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 수행해야 함. 암호화 등 필요한 안전조치는 아래와 같음.
 - ①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②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③ 고유식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④ 고유식별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⑤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⑥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법 제24조)

Q] 이력서 및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포함한 지급신청서가 결재 완료 후 부서원들(기안자, 결재자 아님) 인원이나 타인이 열람 하여도 문제되지 않는가?

A] 고유식별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 또는 열람 등을 할 수는 없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법 제24조)

Q]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FAX로 수신, 발신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고, FAX 전송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등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법 제24조)

Q] 홈페이지 가입을 할 경우 최소한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때 홍길동 (791001-1059***) 이라는 형식으로 전체수집이 아닌 일부 수집도 제한되어야 하는가?

A) 질의에 포함된 예시(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중 10자리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출생일 및 성별 등을 식별 또는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운영시 처리의 투명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제 실시

- 공공기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처리방법· 보유기간 등을 등록
- 행안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공개, 등록사항과 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의 권한 보유

〈개인정보파일 등록 면제 대상〉

-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파일

Q] 조사 자료 및 비상연락망을 보통 워드파일과 출력물로 관리하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 파일로 등록해서 관리해야 하는가?

A] 수집된 정보가 내부에서 사용된다면 개인정보 파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개인정보 파일

Q] 학교에서는 원활한 학급경영을 학기 초 학생의 보호자 정보(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는가?

A] 등록이 면제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파일을 의미함.

-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파일 등
- 요금정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운영 등을 위한 개인 정보파일





개인정보 파일

Q] 교무부에 성적처리계가 있고 각 학년별로 성적관리계가 있다면 성적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가 아님 각 학년별로 나누어 만들어야 하는가?

A] 개인정보파일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맞게 운용하면 됨.





개인정보 파일

Q] 교무부에 성적처리계가 있고 각 학년별로 성적관리계가 있다면 성적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가 아님 각 학년별로 나누어 만들어야 하는가?

A] 개인정보파일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맞게 운용하면 됨.



11.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 및 신고 관련 Q&A

주요내용

→ 개인정보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고지(법 제34조제1항)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사항〉

- 유출 개인정보 항목, 시점 및 경위
-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발생의 경우, 신고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
- → 대규모 유출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신고(법 제34조제3항)

현재는 개인정보유출사고시 공공기관의 통지 및 신고 의무 불비

처벌규정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1. 개인정보 유출 관련 Q&A

\Rightarrow

개인정보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고지(법 제34조제1항)

0] 법에서 정한 '유출'의 범위는 무엇이며, 언제 통지해야 하는가?

A]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 수준의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유출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유출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통지의무가 발생



11. 개인정보 유출 관련 Q&A

-

개인정보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고지(법 제34조제1항)

0] 개인정보가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A]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11. 개인정보 유출 관련 Q&A

개인정보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고지(법 제34조제1항)

Q] 개인정보가 유출 시 신고 방법은?

A]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안부, NIA,KISA에 신고

신고는 5일 이내: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



좀비 PC 및 악성코드 예방법







1. 좀비 PC의 정의

- 좀비 PC의 정의
 - 좀비PC는 악성코드의 감염으로 외부 명령자의 원격으로 제어나 실행이 가능하게 된 PC를 말함

- 악성코드가 감염된 좀비 PC
 - ▶ 의도하지 않은 스팸메일 발송
 - ▶ 특정 홈페이지 (정부 기관 및 공공 사이트) 등을 특정 시간 동시에 집중 공격(DDOS)
 - ▶ 내 컴퓨터에 내장된 각종 정보도 도난 당할 위험이 있음 (공인인증서 해킹 등)





2. 악성코드 감염 예방법

교내 백신 등 필수 프로그램 설치하기

• 교내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백신 프로그램 을 반드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 점검 및 업데이트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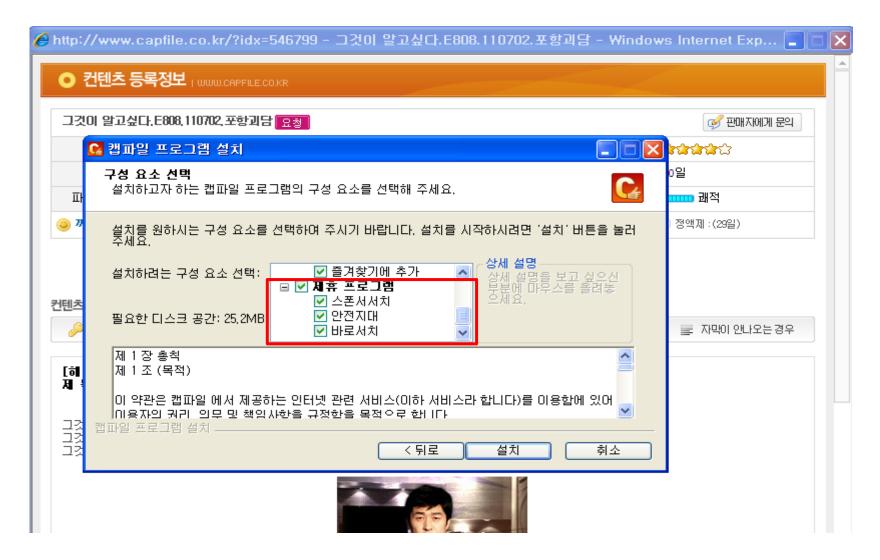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

-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받는 동영상, 이미지, MP3 등에는 악성코드가 숨어져 있을 수 있음
- 파일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설치를 유도하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에는 악성코드 또는 스파이웨어가 숨겨져 있을수 있음 (뒷페이지 추가 설명)
- 일부 파일다운로드 사이트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경유지로 활용됨



2. 악성코드 감염 예방법



출처 :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





2. 악성코드 감염 예방법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

- •SNS 및 웹페이지 등의 의심스러운 URL은 클릭시 주의 필요
- SNS 등의 단축 URL등은 출처를 알 수 없어 해당 URL 등은 클릭 전 더욱 주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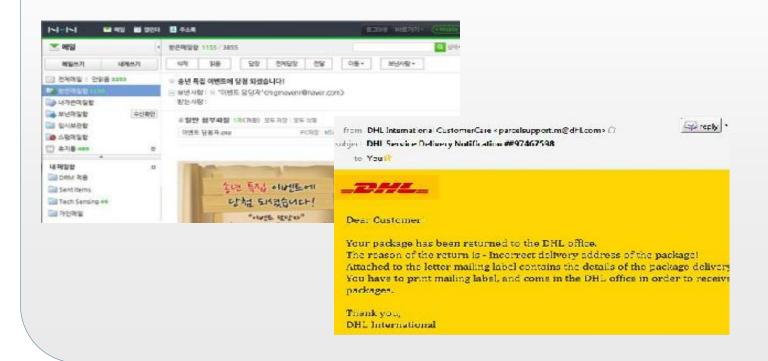




2. 악성코드 감염 예방법

스팸 메일 또는 메일내 첨부 파일 유의하기

- 스팸 메일을 이용해 첨부파일 등에 악성코드를 포함하는 방법
- 첨부 파일 수법 또는 문서 파일을 가장하는 등 지능화 되고 있음
- 해당 메일 안에 포함된 이미지, 첨부파일 등은 클릭하지 말 것!
- FEDEX나 DHL과 같은 외국의 신뢰도 있는 발신자명을 가장하는 수법 주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필수 실천 사항 정리





1.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소개

2008년 10월부터 汎정부 차원에서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I로 지정함

→ 전체 교육.연구기관의 PC 안전성 정기점검, 비밀현황 확인 등 자체 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관련: 외교안보정책관-562(2008.09.09, 국무총리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행계획 보고(2008.09.02, 국무총리실)

→ PC보안진단, 캠페인 전개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가기밀 유출 예방 및 공직자 보안의식 제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세부 시행계획을 기관 실정에 맞게 충실히수립.시행하고 소속.산하기관의 이행여부 관리감독 강화
※ '진단의 날'계획수립 및 실시 결과를 교과부에서 점검 예정



1.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소개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기관 : 전체 교육.연구기관
- 각급기관은 국정원의 진단 프로그램('내PC 지키미')을 전 부서 PC에 설치 및 실행,
 PC진단결과확인시스템은 필요기관에서만 활용
- ➤ PC보안진단 사전준비
- 1주전 업무망 게시판과 팝업창을 제작, 공지하고 퇴근 전 안내방송 실시, 전직원 홍보 및 참여 독려
- PC진단프로그램(내PC 지키미)을 전 부서 PC에 설치
- ▶ 시행 및 취약점 결과 조치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일 지정 : 매월 세번째 수요일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안내방송 실시, PC진단프로그램 실행 및 비밀현황 확인, 취약점 결과 조치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시 보안 가이드

개인정보 조회시

- 1. 업무 목적 이외로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는 안됩니다.
- 2. 업무목적으로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시 보안 가이드

개인정보 저장시

- 1. 불가피하게 업무상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해야 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등은 반드시 암호화 해야 합니다. (압축 툴을 활용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하면 됩니다.)
- 2.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시에는 비밀번호를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조합해서 8자리 이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암호화된 파일을 전송할때는 비밀번호를 메일과 함께 전송하면 안됩니다. 비밀번호는 문자 또는 전화로 타인이 모르게 통보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시 보안 가이드 – 안전한 패스워드 (예)

예) 별헤는밤~2월!

안전하지 않은 패스워드의 예 010123123 abcabc **LOVE123**

안전한 패스워드의 예
P0ngD@n9
!1ov2Y0u
na@flowe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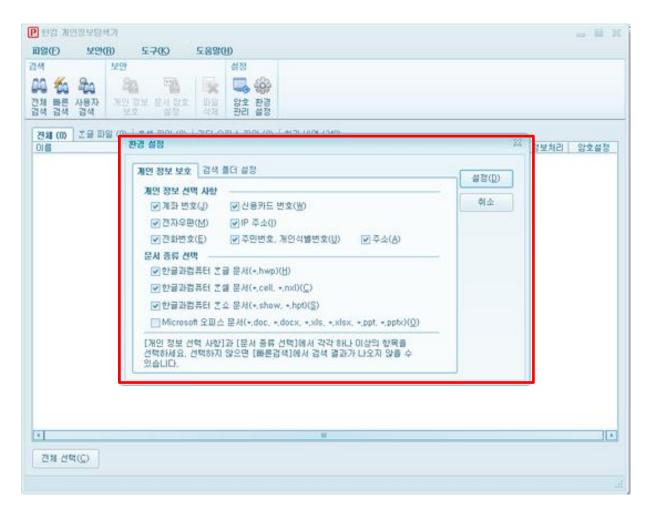
- ✓ 정기적(3개월)마다 패스워드 변경
- ✓ 노출 기미가 있는 경우 바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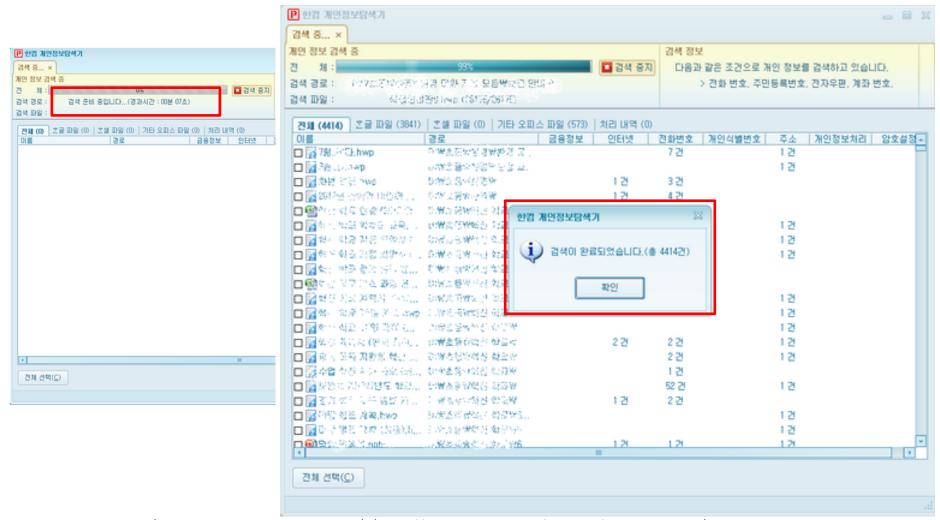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 문서를 검색하여 문서의 일부 내용을 보호 문자로 치환하거나 문서를 암호화해주는 개인 정보 보호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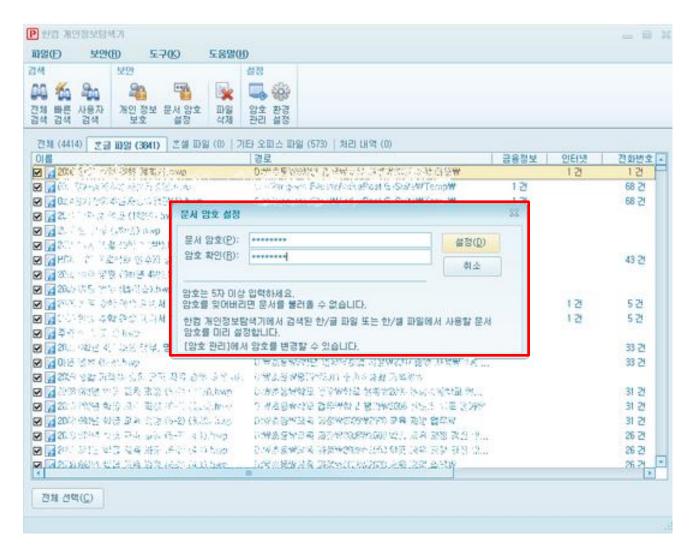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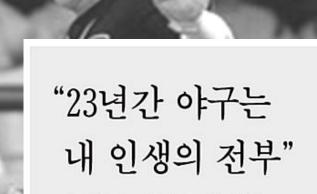












정수근, 자진 은퇴 선언

■ 음주 사건으로 한국야구위원 회(KBO)로부터 두 번째 무기 한 실격 처분을 받은 정수근 (32·전 롯데)이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다.

정수근은 15일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를 통해 은퇴사를 발표하 고 23년 간의 야구인생에 종지





감사합니다